

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신고서(신고증명서)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	10일	
임대사업자	성 명(대표자)	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		
	상 호			전화번호			
	주 소(사무소 소재지)						
주거약자용 임대주택	주택 소재지						
	주택 유형	[] 아파트 [] 연립주택 [] 다세대주택 [] 단독주택					
임대현황	세대수			표준 임대 조건		전환 임대 조건 (실제 임대 조건)	
	구분	세대	세대당 대출금 (천원)	임대보증금	임대료(월)	임대보증금	임대료(월)
	m ²						
	m ²						
	m ²						
	m ²						
	합 계						
주택의 편의시설 구비사항							

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현황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고인

특 별 자 치 시 장
특 별 자 치 도 지 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	없 음
------	-----	-----	-----

유의사항

1. 세대당 대출금은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으로서 매입임대주택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.
2.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표준 임대 조건 및 전환 임대 조건을 적고, 매입임대주택은 전환 임대 조건란에 실제 임대 조건을 적습니다.
3.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위와 같이 임대현황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 별 자 치 시 장
특 별 자 치 도 지 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 고 인	처 리 기 관
	특별자치시 · 특별자치도 · 시 · 군 · 자치구
임대현황 신고서 작성 · 제출 (입주 10일 전)	접 수 신고 내용 확인